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7912호)	우재준 의원	2025. 2. 5.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1044호)	이학영 의원	2025. 6. 24.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7.18.)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9. 17.)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9. 19.)
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공동등록을 의무화하고, 후발 등록자는 협의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산정이 자율에 맡겨져 과도한 청구나 근거 미공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용 산정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해성미확인물질’을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기존 자료의 활용에 관한 비용 계상 시 합의 원칙을 명시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3 신설).

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 등록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6조의5 신설).

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 선임
된 자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새롭게 선임된 자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유해성미확인물질 사업자의 책무 등에 대해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
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표자”를 “이를 공동제출 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로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등록·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1.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제16조의4(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4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을 “이하 “국외제조·생산자””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외제조·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3, 제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 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 자료는 <u>대표자</u> 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 ----- ----- ----- ----- -----이를 공동제출 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 등록 · 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 · 계상의 원칙)</u>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

<신 설>

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1.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제16조의4(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
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
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생
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
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
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
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하
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
상 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
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
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해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4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 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
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
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
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
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
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
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38조(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
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이하 “국외제조·생산
자”-----

1. ~ 5. (현행과 같음)

